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17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9.1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지난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6월 4일 출범하였음.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에 따른 선거로 인하

여 이재명 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출범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준비 중임.

특히, 이재명 정부는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AI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 등을 새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성으로 잡고 있음.

이에 기존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여 외교통상 기능과 산업정책 및 기후에너지 대응 기능의 충돌구조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하여 AI,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 기능과 수산 기능의 차질 없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기능 분산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보고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관련)

- 독일은 에너지 비용 급등, 제조업 경쟁력 붕괴 부작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서 기후변화대응기능을 분리한 후에 ‘연방경제에너지부’로 되돌린 사례를 감안할 때,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이 중요한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나, 자원부분과 원전수출이 산업통상부에 남은 것은 아쉬움.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자원부분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와 환경 기능 융합 시 에너지 기능 축소가 우려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면 에너지·환경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와 원전 기능이 3개 부로 쪼개지고 있는 문제, 전기감독청 및 전력감독청 등 중립적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 원전생태계 진흥 필요 등이 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로 분리 관련)

-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총리실로 옮기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포기인바, 국가채무, 신용등급 악화,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할 것임.
-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던 세입·세출 기능의 분리를 재도입하려는 이유와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모델로 회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관련)

- 기후환경과 에너지 분야는 같은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규제부처에서 에너지를 소관하게 되면 전력수급 안정성, 전기요금 인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독일·영국의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에너지와 기후 분야를 재분리한 사례가 있음.
- 기후에너지부가 생기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바, 보강조치가 필요하며, 국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